

- 3)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운영
- 4)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함
- 5)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 6)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서식을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30일, 12월31일)로 소재지, 연락처,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보고시점이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함. 휴직자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 결과 및 보고서를 관리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2022.3.1. 시행)
- 7)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 8)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육아휴직) 또는 제10호(동반휴직)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바. 직위해제 등과의 구별

1) 직위해제와의 구별

- 가) 휴직과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서로 같으나, 휴직은 부여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이 보장되는 점에 비하여 직위해제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직(직위)을 강제로 해제시키는 제재적 의미를 가지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음
- 나) 직위해제의 사유로는 ①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④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이며, 직위해제의 기간은 승급소요 최저년수, 경력평정기간 및 공무원 연가기간 계산에서 제외됨(「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다) 그리고 경력평정,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휴직은 그 종류에 따라 산입여부가 다르나, 직위해제 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봉급의 8할 지급함, 그 외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함.(「공무원보수 규정」 제29조)
- 라) 휴직은 본인의 청원 또는 직권에 의하여 발생되어 휴직 사유가 소멸 또는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이 이루어지는 반면, 직위해제는 강제로 이루어져 복직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속함